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4가단505696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과사람들 담당변호사 이에나

피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균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정민

변론 종결2024. 9. 6.

판결 선고2024. 10. 11.

주 문

1. 피고 B와 D(E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37 지분에 관하여 2022. 12. 27. 한 합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협의를 21,109,68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109,68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 B와 D(E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22. 12. 27. 한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협의를 21,109,68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109,68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4가소18255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D)은 원고에게 7,492,116원 및 그 중 4,750,000원에 대하여 2004.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 B는 D과 2012. 3. 27. 혼인한 부부 사이로서 2018. 1. 18. F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 B 이름으로 등기를 마친 후 2018. 11. 12. 그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여 왔다(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다. 1) D은 2021. 12. 6. 피고 B와 협의이혼하고, 2022. 4.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2) 2022. 12. 27. 이 사건 가처분의 집행이 해제되었고, 피고 B는 2023. 1. 6. D의 아들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2022. 12.부터 2023. 1.경 사이 C은 채무초과로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이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등 참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함에 있어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분할대상재산인지 여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의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참조).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 B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기는 하나,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의 아들인 피고 C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 일부를 부담하였다는 것이고, 그 매수자금은 피고 C이 부친인 D에게 또는 D 및 피고 B에게 증여한 취지로 봄이 상당한 점(달리 이를

대여금으로 볼 근거는 없고, 설령 대여금으로 보더라도 이 경우 피고 C은 대여금 반환청구권을 가진 일반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D이 매수자금 마련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음은 동일하다), 그 외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시 피고 B가 일방적으로 자금을 전부 부담하였다는 피고 B의 소득 활동, 소득 정도에 관한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이후 D과 피고 B가 부부의 주거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D과 피고 B의 부부공동생활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재산분할협의 존재 및 사해행위 여부

1) D이 피고 B와의 협의이혼에 즈음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쳐둔 사실, 이후 가처분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한 사실은 위에서 본 것과 같고, 그로부터 불과 수일 내에 피고 B가 D의 아들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점에 비추어 보면, D이 이 사건 가처분의 집행을 해제한 것은 사실상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피고 B에게 자신의 몫을 넘겨 완전히 귀속시킨 후 피고 C이 이를 다시 매수하기로 한 약정에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D과 피고 B 사이에 2022. 12. 27.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협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이하 위와 같은 약정을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라 한다), 이와 달리 D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 내에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4 내지 8, 11,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중 적어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6/37지분에 관하여는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① D은 이 사건 가처분 신청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도 경남 거창군 G 토지 중 피고 B의 지분, 경남 함양군 H 토지, 천안시 동남구 I토지 및 지상건물, 천안시 동남구 J아파트 K호 등도 함께 가처분 신청 대상으로 삼아 가처분 등기를 마쳤다가 2022. 11. 30. 및 2022. 12. 27. 그 집행을 모두 해제하였는데, 그 중 위 J아파트 K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들은 모두 두 사람의 혼인기간 중 취득된

부동산들이다. 반면, 혼인기간 중 D 명의로 취득된 부동산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위 나머지 부동산들 중 I 토지는 2014. 4. 30. 피고 B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는 2015. 1. 23.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으므로 위 건물은 그 무렵 신축된 것으로 보이고, 2019. 7. 8. D이 전입신고를 하기도 하여, 당시 위 부동산은 부부공동생활의 터전이었거나 적어도 D이 이를 주거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의 특유재산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 B의 소득활동 내역이나 각 부동산의 취득 자금의 출처 등에 관한 자료가 이 사건 변론에 전혀 현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은 적어도 위 나머지 부동산들에 대한 특유재산 추정 번복 사유의 존재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다. 그럼에도 D은 아무런 조건 없이 위 나머지 부동산들에 대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하였는바, 이로써 위자료 발생 사유 등을 감안한 조치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1) ② D은 2021. 12. 6. 피고 B와의 협의이혼 신고를 하고, 2022. 4.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의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마친 상태에서도 2022. 9.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시 피고 C이 자금을 보탠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를 D 일방에 대한 증여로 볼 것인지 D 및 피고 B에 대한 증여로 볼 것인지와 상관 없이 D이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됨은 앞서 본 것과 같다. 피고들 사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거래가액(148,000,000원)과 실제 지급된 매매대금(84,000,000원)을 비교하여 피고 B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취득하게 된 재산 가치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액 비율로 환산하면 $21/37 (= 84,000,000\text{원} / 148,000,000\text{원})$ 이다. 그런데 위 매매는 사실상 D이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함으로써 무리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 D은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거주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비율을 정함에 있어 D의 의사 역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결국 D과 피고 B 사이에는 $16/37 (= 1 - 21/37)$ 의 비율만큼을 D의 몫으로 함이 적정하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1) 결국 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결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앞서 살펴 본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의 경위에 비추어 D은 이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들은 D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한 것은 재산분할청구권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피고 C이 피고 B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시 지원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었고,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기존에 투입한 자금을 회수하였을 뿐 이로써 D의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점은 알지 못하였다고 다룬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피고들 및 D 사이의 인적 관계, 이 사건 가처분의 집행 해제와 이 사건 매매계약 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은 위와 같은 악의 추정을 뒤집을 만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양도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참조), 전득자인 피고 C의 주장은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을 통해 자신이 주장하는 D에 대한 채권을 우선 회수하였다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그의 악의 역시 더욱 강하게 추정된다.

3)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중 이 사건 부동산 중 16/37 지분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상회복 방법 및 범위

가.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은 수익자인 피고 B와 전득자인 피고 C이 모두 악의인 경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한편, 사해행위인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은 채무자인 D이 피고 B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형태가 아니라 피고 B 명의로 되어 있던 공동 재산에 관하여 D이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므로 원물반환이 이루어지더라도 단지 수익자인 피고 B의 명의로 재산이 반환되는 단계에 머물고 D의 책임재산이 회복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이 아닌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기로 한다.

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4. 1. 18. 기준 원고의 D에 대한 구상금 채권 원리금은 총 21,109,689원(= 원금 4,750,000원 + 지연손해금 15,983,42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들 사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이 148,000,000원인 사실은 위에서 본 것과 같으며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역시 같은 금액으로 추인되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에 대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던 가액 64,000,000원(= 148,000,000원 $\times$ 16/37)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원고의 위 채권 금액 21,109,689원이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가 된다.

다. 소결

따라서 D과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6/37 지분에 관하여 2022. 12. 27. 한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협의를 21,109,68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109,68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효연

별지

1) 한편, 나머지 부동산들 중 G 토지에 관하여도 D은 2022. 11. 30. 가처분 집행 일부 해제 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피고 B는 자신의 지분을 L에 매도하였는바, D이 이와 같이 매도 절차에 적극 협조한 점에 비추어 그 처분대금이 피고 B에게 전부 귀속되었는지 역시 의문이다.